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15 |
|----------|-----|

발의년월일 : 1997. 4. 2 /

발의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개정사유

국외여비규정의 개정(1996. 9. 30, 대통령령 제15, 152호)으로 국외여비
지급 규정 기준액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

주요골자

국외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숙박비 및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변경코자 함.

근거법령

국외여비규정 『별표 2』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속박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미불화)

| 구 분 | 속 박 비 |
|---------|--|
| 의장. 부의장 | 가등급 169 나등급 123 다등급 97 라등급 83 |
| 의 원 | 가등급 137 나등급 99 다등급 76 라등급 65 |

비고 1종

- 가. 가등급의 스톡홀름을 삭제하고 마드리드, 모스크바를 삽입한다.
- 나. 나등급 (1) 아세아주·대양주에 싱가폴, 대만, 북경, 하노이를 삽입한다.
(2) 남북아메카주의 트리니다드토바고를 삭제한다.
(3) 유럽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를 삽입한다.
(4) 중동·아프리카주에 남아프리카공화국를 삽입한다.
- 다. 다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에서 싱가폴, 중화민국을 삭제하고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을 삽입한다.
(2) 남·북아메리카주에서 수리남을 삭제하고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를 삽입한다.
(3) 유럽주에서 덴마크를 삭제하고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를 삽입한다.
(4) 중동·아프리카주에서 나이지리아를 삭제하고 잠비아, 알제리를 삽입한다
- 라. 라등급 (1) 아세아주·대양주에서 인도네시아, 베어마를 삭제하고 마얀마, 몽골을 삽입한다.
(2) 남·북아메리카주에서 아르헨티나를 삭제하고 수리남을 삽입한다.
(4) 중동·아프리카주의 북예멘을 예멘으로 하고 나미비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를 삽입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 | | | | | | | | |
|-------------|--|--|-----------|-----------|--------------|--------------|--------------|-------|----------------|-------|
| 구 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 운임 | 자동차 운임 | 일 비 (1일당) | 숙박비 (1야당) | 식 비 (1일당) | 준 비 금 | | |
| | | | | | | | | 15일미만 | 15일이상 30일미만 | 30일이상 |
| 의 장 부 의장 |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 는 최상 등급 의 철도임 |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 는 최상 등급 의 선임 | 1 등 정액 | 실비 액 | 가등급 30 | 가등급 147 | 가등급 133 | 150 | 180 | 210 |
| | .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 는 그승차에 요하는 실비 액 | .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 는 그승선에 요하는 실비 액 | | | 나등급 30 | 나등급 117 | 나등급 99 | | | |
| 의 원 | . 공무상의 사 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 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 공무상의 사 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1 등 정액 | | 다등급 30 | 다등급 92 | 다등급 72 | 140 | 170 | 195 |
| | | | | | 라등급 30 | 라등급 79 | 라등급 61 | | | |
| | | | | | 가등급 25 | 가등급 130 | 가등급 107 | | | |
| | | | | | 나등급 25 | 나등급 90 | 나등급 78 | | | |
| | | | | | 다등급 25 | 다등급 72 | 다등급 58 | | | |
| | | | | | 라등급 25 | 라등급 62 | 라등급 49 | | | |

개정안

[별표 2]

(단위 : 미불화)

| 구 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 운임 | 자동차 운임 | 일 비 (1일당) | 속박비 (1야당) | 식 비 (1일당) | 준 비 금 | | |
|-------------|-------|-------|----------|-----------|--------------|--------------|--------------|-------|----------------|-------|
| | | | | | | | | 15일미만 | 15일이상 30일미만 | 30일이상 |
| 의 장 부 의장 | | | | | | 가등급 169 | | | | |
| 의 원 | | | | | | 나등급 123 | | | | |
| | | | | | | 다등급 97 | | | | |
| | | | | | | 라등급 83 | | | | |
| | | | | | | 가등급 137 | | | | |
| | | | | | | 나등급 99 | | | | |
| | | | | | | 다등급 76 | | | | |
| | | | | | | 라등급 65 | | | | |

| 현 행 | 개 정 안 |
|---|---|
| <p>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p> <p>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u>스톡홀름</u>, 동경, 홍콩</p> <p>나. 나등급</p> <p>(1) 아세아주 · 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p> <p>(2) 남 · 북아메리카주 : 위싱턴, 로스엔젤레스, 센프라시스코 <u>트리니다드토바고</u>, 자메이카</p> <p>(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p> <p>(4) 중동 · 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캐마루운,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p> <p>다. 다등급</p> <p>(1) 아세아주 · 대양주: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지아, <u>싱가폴</u>,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u>중화민국</u>,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p> | <p>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p> <p>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동경, 홍콩, <u>마드리드</u>, <u>모스크바</u></p> <p>나. 나등급</p> <p>(1) 아세아주 · 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u>싱가폴</u>, <u>대만</u>, <u>북경</u>, <u>하노이</u></p> <p>(2) 남 · 북아메리카주 : 위싱턴, 로스엔젤레스, 센프라시스코 자메이카</p> <p>(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아크, 체코</p> <p>(4) 중동 · 아프리카주: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캐마루운,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u>남아프리카공화국</u></p> <p>다. 다등급</p> <p>(1) 아세아주 · 대양주: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지아,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u>인도네시아</u>, <u>중국</u>, <u>베트남</u></p> |

| 현 행 | 개 정 안 |
|--|--|
| <p>(2) 남·북아메리카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수리남</p> <p>(3) 유럽주 : 덴마이크, 아일랜드, 포르투칼, 희랍</p> <p>(4) 중동·아프리카주: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p> <p>라. 라등급</p> <p>(1) 아세아주·대양주: 인도네시아, 베이마, 스리랑카, 휘지 네팔</p> <p>(2) 남·북아메리카주: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로, 페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구아이, 수리남</p> <p>(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p> | <p>(2) 남·북아메리카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p> <p>(3) 유럽주 : 아일랜드, 포르투칼, 희랍,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p> <p>(4) 중동·아프리카주: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p> <p>라. 라등급</p> <p>(1) 아세아주·대양주: 스리랑카, 휘지, 네팔, 미얀마, 몽골</p> <p>(2) 남·북아메리카주: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구아이, 수리남</p> <p>(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p> |

| 현 행 | 개 정 안 |
|--|--|
| <p>(4) 중동 · 아프리카주: 레마논, <u>북예멘</u>, 모로코, 튜니지, 루안다, 밀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p> <p>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p> | <p>(4) 중동 · 아프리카주: 레마논, <u>예멘</u>, 모로코, 튜니지, 루안다 <u>밀라위</u>,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u>나미비아</u>, <u>탄자니아</u>, <u>나이지리아</u></p> <p>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